

이주현 노무사 「핵심정리 사회보험법」
제10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② (2025-04-22)

P.125 표 내용 수정

<기존>

급여액	기본연금액	**연금수급 전 3년간의 각 연도별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(A)과 **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(B)을 합한 금액에 1200%를 곱한 금액 ⇒ 단, 만약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(1년 미만이면 매1개월을 12분의1년으로 계산)마다 앞서 계산한 금액에 5%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. (이하 생략. 교재 참고)
-----	-------	---

<수정>

급여액	기본연금액	**연금수급 전 3년간의 각 연도별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(A)과 **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(B)을 합한 금액에 $\frac{1200}{1000}$ 를 곱한 금액 ⇒ 단, 만약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(1년 미만이면 매1개월을 12분의1년으로 계산)마다 앞서 계산한 금액에 5%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. (이하 생략. 교재 참고)
-----	-------	--

P.198 077번 문제 정답수정 및 해설추가

<기존>

정답 > 071(O), 071-①(O), 071-②(O), 071-③(O), 072(O), 072-①(O), 072-②(O), 072-③(O), 073(x), 074(x), 075(O), 076(x),
077(O), 078(O)

<수정>

077 (x)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 ⇒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화된 날이 속하는 달
 정답 > 071(O), 071-①(O), 071-②(O), 071-③(O), 072(O), 072-①(O), 072-②(O), 072-③(O), 073(x), 074(x), 075(O), 076(x),
077(x), 078(O)

P.256 063번 문제 정답수정 및 해설추가

<기존>

정답 > 062(x), 063(O), 064(x), 065(x), 066(O), 067(O), 067-①(O), 067-②(O), 068(O)

<수정>

063 (x) 고용노동위원회 ⇒ 고용보험위원회
 정답 > 062(x), 063(x), 064(x), 065(x), 066(O), 067(O), 067-①(O), 067-②(O), 068(O)

P.271 198번 문제 해설수정

<기준>

198 (×) 상한액 150만원 ⇒ 160만원. // 육아휴직급여액은 시작일~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, 7개월~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. 상한액은 시작일~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, 4개월~6개월은 200만원, 7개월~종료일까지는 160만원으로 한다. 하한액은 기간 관계 없이 70만원으로 한다.

<수정>

198 (×) 상한액 150만원 ⇒ 250만원. // 육아휴직급여액은 시작일~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, 7개월~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. 상한액은 시작일~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, 4개월~6개월은 200만원, 7개월~종료일까지는 160만원으로 한다. 하한액은 기간 관계 없이 70만원으로 한다.

P.291 29번 문제 해설수정

<기준>

29 ④ 30일 ⇒ 1개월, 10일 이하 ⇒ 10일 미만(고보법 §40) (이하 생략. 교재 참고)

<수정>

29 ④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. (이하 생략. 교재 참고)

P.331 048번 문제 지문수정

<기준>

048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단,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 ()

<수정>

048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단,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 ()

P.446 076번 문제 지문수정

<기준>

076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. ()

<수정>

076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. ()